## C - 113 - 2020

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.

- (다) 낙뢰 발생 시 철근, 강관 파이프, 금속류 자재 등의 운반 작업 및 크레인 등에 의한 자재 인양 작업 등을 금지시켜야 한다.
- (라) 낙뢰 발생 시 울타리, 금속재 배관 등 낙뢰 전류의 통전 경로가 될 수 있는 금속 체와 고압선·전신주 부근, 공터의 고립된 큰 나무 등의 밑에서 근로자들을 멀리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.
- (마)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의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예 방을 위하여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, 피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『산업표 준화법』에 따른 적합한 피뢰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

## 5.2.3 동절기 안전조치

## (1) 폭설과 결빙에 대한 재해예방

- (가) 가설계단, 작업발판, 개구부 주위 및 근로자의 이동 통로에는 눈과 결빙으로 인한 넘어짐, 떨어짐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 결빙부위 및 눈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모래,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나) 현장 내 가설도로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모래함이나 염 화칼슘 등을 비치하고 근로자와 건설장비의 동선을 분리하여야 한다.
- (다) 대설주의보, 대설경보 등의 기상 특보 발령 시 눈이 계속 쌓여 이로 인한 하 중 증가로 가설구조물 등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고, 무너짐 위험구간에는 지속적으로 쌓인 눈을 제거하고, 하부에 근로자의 통행 을 금지한다.
- (라) 현장 내 처마 부위 또는 흙막이 지보공, 터널 수직구 상부 등에 고드름이 발생할 경우 고드름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드름을 제거하거나 접근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마) 철골작업(철탑, 비계 포함)의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작업을